

● 제290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12. 1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권수정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1062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권수정 의원의 13명
- 나. 제안일 : 2019. 10. 15.
- 다. 회부일 : 2019. 10. 2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시장, 소속기관·산하 공공기관 등의 장은 성평등 관점에 따라 음성 등 안내방송이나 홍보물제작, 유포 등에 유의해야하며,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함
- 이에 성평등 관점에 따른 기관 운영과 기관장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시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 장의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을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예방 환경 조성 책무를 정함(안 제21조).

- 시장·소속기관·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음성 등을 통한 안내방송이나 홍보물을 기획·제작하는 경우에 성평등 관점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야함(안 제21조제6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정의 대시민 홍보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의식을 고려하도록 하여, 시정전반에 걸쳐 성인지 강화를 통해 성평등 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2 주요사항 검토

□ 홍보물 등에 대한 성평등 관점 반영(안 제21조제6항 신설)

-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안내방송이나 홍보물의 기획·제작 시, 성평등 관점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서울시나 공공기관의 홍보물은 해당 기관의 가치를 드러냄과 동시에 시민들의 성평등 의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구로, 최근 시민들의 성평등 의식 확산, 소셜네트워크 활성화 등으로 인해 성차별적이거나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한 홍보물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제10조¹⁾에 따라 기 시

1)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제10조(홍보물 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소속기관과 공기업 등에서 제작하는 홍보물(대·내외적으로 특정 사항을 공중(公衆)에게 전달

행 중인 홍보물 성별영향평가와 유사한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는 기존에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규정되었다가 지난 6월 제287회 정례회를 통해 별도의 조례로 분리 제정된 바 있어, 입법경제적 측면의 중복성과 시민들에게 혼선을 줄 소지가 있음.

- 개정안에서 항을 신설한 제21조²⁾는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및 의무 교육, 사례 접수·처리,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내용인 홍보물에 성평등 관점을 고려하도록 하는 사항과는 다소 이질적이라 할 수 있어, 새로운 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조례의 체계나 내용의 통일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임.

하거나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간행물, 영상물, TV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홍보책자, 팸플릿, CD, 스티커, 포스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제21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시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또한 개정안의 일부 문맥이 맞지 않는 등 조문정비가 필요함.
- 한편 동 개정안의 입법예고 결과, 홈페이지 601건, 이메일 190건, 팩스 20건 및 전화를 통한 의견 전달 등 조례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이 접수된 바 있고, 최초 공동발의 의원 중 3명이 발의를 철회하는 등 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수렴된 바, 성평등 정책에 대한 시민 정서나 감정을 고려하여 세심한 정책추진이 요구된다 할 것임.

3 종합 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안내방송이나 홍보물의 기획·제작 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미 서울시와 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물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성주류화 제도의 추진과 확산을 통해 시정 전반의 성인지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바,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최근 제정안과 중복문제, 조항 내의 통일성 문제, 시민의 부정적인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